

##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1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일자	2008. 3. 28.
제 출 자	거창군수

### 1. 제정이유

우리 군 공유재산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설치 근거 및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-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

나. 세입 항목을 규정함(안 제2조)

- 일반회계 전입금, 공유재산의 매각대금, 사용료, 대부료, 변상금 등

다. 세출 항목을 규정함(안 제3조)

- 잡종재산의 취득, 공공청사 및 부지의 취득, 토지합병·분할 수수료 등

라.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금지함(안 제4조)

마. 예비비를 규정함(안 제5조)

-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
(2) 입법예고(2008. 1. 10. ~ 1. 30.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##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거창군 공유재산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.

1.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
2. 군유재산의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 및 변상금
3. 국유재산 및 도유재산 관리사무의 수입에 따른 매각대금·사용료·대부료·연체료·변상금 및 부동산 신탁수입금 중 거창군 귀속분
4. 제2호 및 제3호 외에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입
5. 국·도비 보조금
6. 특별회계의 이자수입

제3조(세출)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.

1. 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
2.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
3. 토지가치의 향상을 위한 분할·합병 및 집단화
4.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증대 사업
5. 공유재산의 관리

제4조(전출금지) 이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.

제5조(예비비)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제6조(예산의 편성 등) 이 조례에 따른 예산의 편성·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제7조(회계관리)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